

안산시 조례 중 대외직명 등 일괄정비 조례안

의안 번호	306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.10. .
제출자 : 안산시장

제정이유

- 2017. 7. 1. 대외직명 변경(계장→팀장) 시행에 따른 이전 대외직명 인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 행정의 신뢰성 및 혼란 방지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대외직명 “계장” 을 “팀장” 으로, “주사” 를 “팀장” 으로 변경함.
(안 제1조부터 안 제57조까지)

제정조례안 : 붙임1

신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2

- 「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」 제4조제1항 및 제2항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입법예고 결과 : 해당없음

* 입법예고 생략 :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성이 없음

기타 참고사항 : 붙임3

- 대외직명(6급 이하) 변경 설문조사 결과 보고 (총무과-19004호, 2017.6.22.)
- 이전 대외직명 인용 조례 발췌문
- 방침결정문(계획서)

< 불임 1 >

안산시 조례 중 대외직명 등 일괄정비 조례안

제1조(「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5항 중 “계장” 을 “팀장” 으로 한다.

제2조(「안산시청장(葬)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청장(葬)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6항 중 “총무계장” 을 “총무팀장” 으로 한다.

제3조(「안산시 포상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주사가” 를 각각 “팀장이” 로 한다.

제4조(「안산시 안전도시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5항 중 “담당주사가” 를 “담당팀장이” 로 한다.

제5조(「안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·분석·평가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·분석·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계장” 을 “팀장” 으로 한다.

제6조(「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2호 중 “담당주사” 를 “담당팀장” 으로 한다.

제7조(「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6 중 “담당계장” 을 “담당팀장” 으로 한다.

제8조(「안산시 체육진흥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담당계장” 을 “담당팀장” 으로 하고, 제27조제1항제2호 중 “체육업무담당계장” 을 “체육업무담당팀장” 으로 한다.

제9조(「안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기획업무담당주사가” 를 “기획업무담당팀장이” 로 한다.

제10조(「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제장” 을 “팀장” 으로 한다.

제11조(「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제장” 을 “팀장” 으로 하고,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실명제란 중 “○○제장” 을 “○○팀장” 으로 한다.

제12조(「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3호 중 “통합기금업무담당주사” 를 “통합기금업무담당팀장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주무담당주사 및 업무담당주사” 를 “주무담당팀장 및 업무담당팀장” 으로 한다.

제13조(「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담당주사가” 를 “담당팀장이” 로 한다.

제14조(「안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4항 중 “업무담당주사로” 를 “업무담당팀장으로” 로 한다.

제15조(「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·운영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업무담당주사로”를 “업무담당팀장으로”로 한다.

제16조(「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2항 중 “주사로”를 “팀장으로”로 한다.

제17조(「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 중 “업무담당계장”을 “업무담당팀장”으로 한다.

제18조(「안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업무담당주사로”를 “업무담당팀장으로”로 한다.

제19조(「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 중 “담당계장”을 “담당팀장”으로 한다.

제20조(「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담당업무주사가”를 “담당업무팀장이”로 한다.

제21조(「안산시 4·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4·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업무담당계장”을 “업무담당팀장”으로 한다.

제22조(「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제2호 중 “업무담당주사”를 “업무담당팀장”으로 한다.

제23조(「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5항 중 “주사가”를 “팀장이”로 한다.

제24조(「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항 중 “주사가”를 “팀장이”로 한다.

제25조(「안산시 창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계장”을 “팀장”으로 한다.

제26조(「안산시 최용신기념관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최용신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6항 중 “업무담당주사가”를 “업무담당팀장이”로 한다.

제27조(「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3호 중 “노인복지담당주사”를 “노인복지담당팀장”으로 한다.

제28조(「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2호 중 “장애인복지담당주사”를 “장애인복지담당팀장”으로 한다.

제29조(「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주사가”를 “팀장이”로 한다.

제30조(「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6항 중 “업무담당주사로”를 “업무담당팀장으로”로 하고, 제40조제1항제2호 중 “업무담당주사”를 “업무담당팀장”으로 한다.

제31조(「안산시 아동·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아동·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담당계장”을 “담당팀장”으로 한다.

제32조(「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업무담당주사”를 “업무담당팀장”으로 한다.

제33조(「안산시 도시계획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0조제2항 중 “주사가”를 “팀장이”로 한다.

제34조(「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2호 중 “담당주사”를 “담당팀장”으로 한다.

제35조(「안산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 중 “담당주사가”를 “담당팀장이”로 한다.

제36조(「안산시 도시개발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업무담당계장”을 “업무담당팀장”으로 한다.

제37조(「안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담당계장”을 “담당팀장”으로 한다.

제38조(「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1항 중 “업무담당주사가”를 “업무담당팀장이”로 하고, 제62조제1항제2호 중 “담당주사”를 “담당팀장”으로 한다.

제39조(「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담당계장”을 “담당팀장”으로 한다.

제40조(「안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

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1항 중 “계장”을 “팀장”으로 하고, 제12조제6항 중 “담당계장”을 “담당팀장”으로 한다.

제41조(「안산시 도시공원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5항 중 “주사로”를 “팀장으로”로 한다.

제42조(「안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교통 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담당주사가”를 “담당팀장이”로 한다.

제43조(「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업무담당주사로”를 “업무담당팀장으로”로 한다.

제44조(「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대중교통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담당주사로”를 “담당팀장으로”로 한다.

제45조(「안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6항 중 “업무담당주사로”를 “업무담당팀장으로”로 한다.

제46조(「안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5항 중 “주사로”를 “팀장으로”로 한다.

제47조(「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전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전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계장”을 “팀장”으로 한다.

제48조(「안산시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안산

시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“담당계장” 을 “담당팀장” 으로 한다.

제49조(「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제2호 중 “업무담당주사” 를 “업무담당팀장” 으로 한다.

제50조(「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5항 중 “업무담당주사로” 를 “업무담당팀장으로” 로 한다.

제51조(「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6항 중 “담당주사로” 를 “담당팀장으로” 로 한다.

제52조(「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중 “업무담당계장” 을 “업무담당팀장” 으로 한다.

제53조(「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“업무담당주사로” 를 “업무담당팀장으로” 로 한다.

제54조(「안산시 도서관 설치·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도서관 설치·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1항 중 “담당계장” 을 “담당팀장” 으로 한다.

제55조(「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항 중 “계장” 을 “팀장” 으로 한다.

제56조(「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수돗물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업무담당주사가”를 “업무담당팀장이”로 한다.

제57조(「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7조제5항 및 제95조제4항 중 “주사가”을 각각 “팀장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총 무 과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총무과장 최 관
	계장·팀장 직위·성명	조직교육팀장 김 준 기
	담당자 성명·전화	홍 인 표 (행정 3108)